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제312회 제1차 정례회

- 대구광역시달서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

# 제 안 설 명 서



2025. 6.

정 순 옥 의원

# 제안 설명서

제안자: 정순옥 의원

대구광역시달서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 본 조례안은 「아동복지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3조의2에 따라 달서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 현행 「대구광역시달서구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에도 일부 관련 규정이 포함되어 있으나, 법령에서 위임한 조직·구성·운영 기준을 체계적으로 규율하기 위해 별도 조례로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 이에 따라 본 조례안을 제정하여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함입니다.

##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 제1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법령상 위임 근거를 명시하였습니다.
- 제2조부터 제3조까지는 위원회의 기능 및 위원 구성 기준을 규정하였습니다.
- 제4조는 사례결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 제5조부터 제9조까지는 위원의 임기, 위원장의 직무, 해촉, 회의 운영, 제척 등의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 제10조는 관계자 의견 청취 절차에 관한 사항입니다.
- 제11조부터 제12조까지는 간사 지정 및 회의록 작성과 관련된 실무 규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는 위원의 비밀유지의무, 수당 지급,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 규정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 부칙에서는 기존 위원에 대한 경과조치 및 관련 조례 일부 조항의 개정사항을 포함하였습니다.

**□ 본 조례안에 대한 사전조치 사항으로는**

-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2025년 5월 27일부터 2025년 6월 9일까지 달서구의회 홈페이지 등에 입법예고하여 주민 의견을 수렴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 이상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 본 조례안은 「아동복지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설치와 운영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대구광역시달서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정순옥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00925043
----------	----------

발의연월일: 2025. 5. 27.

발 의 자: 정순옥, 도하석, 박왕규,  
남현주, 정창근

## 1. 제안이유

- 「아동복지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3조의2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해야 하는 의무가 있음.
- 「대구광역시달서구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에 일부 관련 규정이 포함되어 있으나, 법령에서 위임한 조직·구성·운영 기준을 별도의 조례로 체계화함으로써 위원회의 법적 정합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본 조례를 제안함.

## 2. 주요내용

- 가. 목적 및 법령상 위임 근거 명시(제1조)
- 나. 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에 관한 규정(제2조~제3조)
- 다. 사례결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제4조)
- 라. 위원 임기, 위원장 직무, 위원 해촉, 회의 운영, 제척 등에 관한 규정(제5조~제9조)
- 마. 관계자 의견 청취에 관한 규정(제10조)

바. 간사 지정 및 회의록 기록·보관에 관한 규정(제11조~제12조)

사. 비밀유지 의무, 수당 및 세부 운영 사항에 관한 규정(제13조~제15조)

아. 부칙: 기존 위원에 대한 경과조치 및 관련 조례 개정

### **3. 제정조례안:** 따로 붙임

## **4. 참고사항**

가. 관계 법령

- 「아동복지법」 제12조
-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13조, 제13조의2

나.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비대상)

다. 관련 기존 조례 조문 및 정비사항

- 별첨 1: 「대구광역시달서구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 별첨 2: 「대구광역시달서구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신·구조문대비표

## 대구광역시달서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3조의2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서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①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서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법 제12조제1항에서 정의한 사항을 심의한다.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위원회 업무를 소관하는 부서의 국장이 된다.

④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되,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위원이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유아교육법」 제22조 또는 「초·중등교육법」 제21조에 따

른 교원의 자격을 갖춘 사람

나. 대구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 또는 대구지방고용노동청에 소속된 공무원으로서 아동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했던 사람

2. 「변호사법」 제4조에 따른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의료법」 제5조에 따른 의사 면허를 소지한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아동복지시설 또는 아동복지 관련 단체에서 아동 분야 업무를 3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했던 사람

5.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경찰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자치경찰공무원으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

6. 아동복지학, 사회복지학 또는 심리학 분야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7. 그 밖에 구청장이 아동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4조(사례결정위원회) ① 법 제12조제1항제2호부터 제8호까지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 소속으로 사례결정위원회를 둔다.

② 사례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은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13조

의2를 따른다.

③ 사례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제5조(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만 연임할 수 있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심의 관련 기밀을 누설한 경우
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경우
4. 건강 악화, 사망 등으로 직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
5. 그 밖에 품위 손상, 부적절한 행위가 인정된 경우

제8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개최한다.

②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찬성과 반대가 같은 수인 경우 결정권을 가진다.

③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회의를 비공개로 할 수 있다.

④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경우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으며, 회의록 작성 및 사후 보고를 하여야 한다.

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제척 등) ① 위원이 심의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으면 해당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회의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회의를 회피하여야 하며, 위원장이 제척을 명할 수 있다.

제10조(의견 청취 등)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 및 이해관계인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간사) 위원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위원회 업무를 소관하는 부서의 팀장이 된다.

제12조(회의록) 간사는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다음 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13조(비밀유지의 의무) 위원회의 위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수당 등) ①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

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구광역시달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5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 및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대구광역시달서구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심의) 구청장은 「아동복지법」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대구광역시달서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그 밖에 아동의 보호 및 복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도 심의를 거칠 수 있다.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제13조부터 제17조까지를

각각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로 하며, 제18조를 제15조로 한다.  
제19조를 제16조로 한다.

# 【 관계 법령 】

## □ 아동복지법

[시행 2024. 8. 7.] [법률 제20218호, 2024. 2. 6., 일부개정]

**제12조(아동복지심의위원회)** ①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그 소속으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각각 둔다. 이 경우 제2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항에 관한 심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위원회 소속으로 사례결정위원회를 두고, 사례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으로 본다. <개정 2020. 12. 29., 2021. 12. 21., 2024. 2. 6.>

1. 제8조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제15조에 따른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3. 제16조에 따른 퇴소조치에 관한 사항
4. 제16조의3에 따른 보호기간의 연장 및 보호조치의 종료에 관한 사항
- 4의2. 제16조의4에 따른 재보호조치 및 보호조치의 종료에 관한 사항
5. 제18조에 따른 친권행사의 제한이나 친권상실 선고 청구에 관한 사항
6. 제19조에 따른 아동의 후견인의 선임이나 변경 청구에 관한 사항
7. 지원대상아동의 선정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아동의 보호 및 지원서비스를 위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심의위원회의 조직·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현황에 관한 사항을 연 1회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7. 9. 19.>

## □ 아동복지법 시행령

[시행 2025. 1. 1.] [대통령령 제34952호, 2024. 10. 22., 일부개정]

**제13조(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① 법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18. 3. 6., 2020. 9. 29., 2021. 6. 29.>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8. 3. 6.>

③ 심의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18. 3. 6.>

④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및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명하는 사람(시·도는 4급 이상 공무원, 시·군·구는 5급 이상 공무원이 포함되어야 한다)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위원이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4. 6. 11., 2018. 3. 6., 2020. 9. 29., 2021. 6. 29.>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유아교육법」 제22조 또는 「초·중등교육법」 제21조에 따른 교원의 자격을 갖춘 사람

나. 시·도 교육청(시·군·구의 경우에는 교육지원청을 말한다)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소속된 공무원으로서 아동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했던 사람

2. 「변호사법」 제4조에 따른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의료법」 제5조에 따른 의사 면허를 소지한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아동복지시설 또는 아동복지 관련 단체에서 아동 분야 업무를 3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했던 사람

5.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경찰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자치경찰공무원으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
  6. 아동복지학, 사회복지학 또는 심리학 분야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7. 그 밖에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동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 ⑤ 심의위원회 위원 중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18. 3. 6.>
- ⑥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8. 3. 6.>
-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 또는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8. 3. 6., 2020. 9. 29.>

**제13조의2(사례결정위원회)** ① 법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사례결정위원회(이하 “사례결정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사례결정위원회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심의위원회 위원 중에서 해당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시·도 사례결정위원회: 시·도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2. 시·군·구 사례결정위원회: 시·군·구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③ 사례결정위원회 위원은 제13조제4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심의위원회 위원 중에서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④ 사례결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례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21. 6. 29.]

## [별첨] 1

### 「대구광역시달서구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 제정) 2017.10.23 조례 제1248호  
(전부개정) 2021.04.01 조례 제1498호  
(일부개정) 2023.02.21 조례 제1706호  
(일부개정) 2023.10.11 조례 제1772호 (대구광역시달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22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서구의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2. 21.)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아동학대”란 법 제3조제7호에 따른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3. “보호자”란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 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4. “피해아동”이란 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아동학대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아동을 말한다.
5. “아동보호전문기관”이란 법 제45조에 따라 설치된 기관을 말한다.
6. “아동복지시설”이란 법 제50조에 따라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7. “아동보호전담요원”이란 보호대상아동 양육상황 점검 및 사후관리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8. “공공기관”이란 대구광역시 달서구(이하 “구”라 한다)와 달서구의회 및 달서구 소속 행정기관과 출연기관, 출자기관을 말한다.
9. “학대피해아동쉼터”란 법 제53조의2에 따라 구청장이 지정한 시설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하여 법령 및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

다.

제4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법 제17조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제5조(구청장의 책무 등) ①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하며 이를 위한 정책을 강구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및 아동보호전담요원의 신변보호를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아동복지 시설 등 관련 기관에 대한 지도·감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5조의2(아동학대전담공무원 임용) ①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구 소속 공무원으로서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이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아동학대 관련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임용한다.

③ 구청장은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전문성 제고 등을 위하여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제3항에 따라 아동학대 업무 분야를 필수보직기간을 초과하여 보직하는 업무 분야로 정할 수 있고, 그 필수보직기간을 구 인사운영 기본계획 등에서 정할 수 있다.

제6조(아동학대 신고의무) ① 누구든지 아동학대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23. 2. 21.)

②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아동학대 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인의 인적 사항 또는 신고인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안 된다.

제7조(아동학대예방계획의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달서구 아동학대예방계획(이하 “예방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예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정책수립
2.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 관련 예산 확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예방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이나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효율적인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피해아동 지원 관련 시설, 교육기관, 사법경찰, 의료기관, 법률기관 등 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 및 피해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달서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12조제1항에서 정한 사항
2. 법 제22조에 따른 아동학대 예방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 지원서비스 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의안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아동 관계 전문가, 이해관계인 또는 지역주민을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2회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장 및 공무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제12조(위원회 운영 등)**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한 명을 두며, 간사는 아동가족과장이 되고, 서기는 아동보호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개정 2023. 10. 11.)

③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

[전문개정 2023. 2. 21.]

제13조(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 등) ① 학대피해아동쉼터(이하 “쉼터”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피해아동 보호 및 숙식제공
2. 피해아동 생활지원
3. 상담 및 치료
4. 교육 및 정서지원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법 제59조제1호에 따라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피해아동의 권익 보호와 신체적·정서적 안정을 위하여 쉼터의 주소 및 시설 등을 공개하지 아니하고, 쉼터 운영 관계자 외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2. 21.]

제14조(예산지원) 구청장은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기관 또는 시설에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아동학대예방 교육) 구청장은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협조하여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2항에 해당하는 아동학대 범죄 신고의무자 및 달서구민 등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6조(홍보 등) ① 구청장은 달서구 소식지, 달서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법 제23조에 따른 아동학대예방주간에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 및 피해아동보호를 위한 행사와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제17조(관련정보의 제공) 구청장은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구민에게 필요한 정보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8조(비밀 준수의 의무)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채용된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및 아동보호전담요원은 이 조례에 따라 채용된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대구광역시달서구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부 칙(개정 2023. 2. 21. 조례 제17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23. 10. 11. 조례 제177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16) 생략

(17) 대구광역시달서구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중 “여성가족과장”을 “아동가족과장”으로 한다.

(18)~(23) 생략

[별첨] 2

「대구광역시달서구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9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 및 피해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달서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p> <p>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법 제12조제1항에서 정한 사항</li> <li>2. 법 제22조에 따른 아동학대 예방 등에 관한 사항</li> <li>3. 그 밖에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 지원서비스 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li> </ol>	<p>제9조(심의) 구청장은 「아동복지법」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에 해당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대구광역시달서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그 밖에 아동의 보호 및 복지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도 심의를 거칠 수 있다.</p>
<p>제10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의안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아동 관계</p>	<p>&lt;삭 제&gt;</p>

전문가, 이해관계인 또는 지역 주민을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2회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장 및 공무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제12조(위원회 운영 등)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한 명을 두며, 간사는 아동가족과장이 되고, 서기는 아동보호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③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

제13조 ~ 제19조 (생략)

<삭 제>

<삭 제>

제10조 ~ 제16조 (현행 제13조부터 제19조까지와 같음)